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자동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시 결함을 추정하도록 하며, 결함을 은폐·축소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2.4. 공포, 2021.2.5. 시행)됨에 따라 결함 추정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 추정 요건(안 제8조의3 신설)

-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같은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함

나. 자동차 사고조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안 제8조의4 신설)

-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자동차결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업무(안 제8조의5 신설)

- 결합정보 신고, 수집, 저장, 분석,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및 유지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라.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비공개 정보(안 제9조의9 신설)

- 개인정보 및 자동차제작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나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안 제9조의10 신설)

- 재심의 요청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심의 결과는 심의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바.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사무 추가(안 제14조의7)

- 고유식별정보처리가 불가피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추가함

사. 자동차결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안 제19조제11항)

- 자동차결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지정된 자에게 위탁함

아. 과징금 산정비율 상향 및 합리적 감경 규정 마련(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 법률에서 결합 은폐, 축소 또는 결합 미시정시 과징금이 상향(매출

액의 100분의1 → 100분의3)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비율을 상향함

○ 자발적 리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제작자등이 자진하여 시정조치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감경(50% 이내) 및 상한액을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 법률에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1,000만원→2,000만원)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결함 추정 요건)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8조의4(자료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1조제13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4.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1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자동차 사고 또는 화재 영상

2.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서 또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자동차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유형별 조사서, 피해신고서, 질문기록서

4.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자동차 사고 조사 보고서 및 보험처리이력

5.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정한 차량가액 기준표

6. 그 밖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사고조사에 필요하여 관계기관과 자료 제공에 협의한 자료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의5(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결함정보를 신고,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2. 수집된 결함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통신설비
3. 분석된 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관리 개선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업무
3.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
4. 그 밖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불법 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9를 제9조의11로 하고, 제9조의9 및 제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9조의9(위원회의 비공개 정보) 법 제47조의8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
3. 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5. 개별 교환·환불중재사건의 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한 정보

제9조의10(위원회 재심의 절차)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6제7항에 따른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 요청서에 요청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관하여는 제9조의6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사무국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제15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⑦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19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제20조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과징금 산정비율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산정비율	과징금 상한액
가. 법 제31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2항	해당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u>100분의 3</u>	없음

비고

매출액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판매 대수(개수)에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판매가격(부가가치세 등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1의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비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자기인증 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합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 50% 이내

2) 자기인증 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합조사 착수 이후에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25% 이내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세부 감정기준 등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산정비율	과징금 상한액
가.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법 제74조 제3항제1		

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호		
1)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또는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를 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u>10</u> <u>0분의 2</u>	100억원 (스스로 결정 하여 시정조 치하는 경우 50억)
2)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u>10</u> <u>0분의 2</u>	50억원 (스스로 결정 하여 시정조 치하는 경우 25억)
3)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향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u>10</u> <u>0분의 2</u>	50억원 (스스로 결정 하여 시정조 치하는 경우 25억)
4)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u>10</u> <u>0분의 2</u>	50억원 (스스로 결정 하여 시정조 치하는 경우 25억)
5)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u>10</u> <u>0분의 2</u>	50억원 (스스로 결정 하여 시정조 치하는 경우 25억)
6)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u>10</u>	50억원 (스스로 결정

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0분의 2	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25억)
7) 그 밖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 0분의 2	10억원 (스스로 결정 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5억)
8) 제7)에 해당하는 경우 중 에어백 경고문구 표기 기준 부적합 등 자동차의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 0분의 2	1억원 (스스로 결정 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0.5억)
나. 법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 제3항제2 호	해당 자동차 부품 매출액 의 100분의 2	10억원 (스스로 결정 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5억)

비고

1. 매출액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서 상의 대상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말한다) 판매 대수(개수)에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각각의 판매가격(부가가치세 등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스스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 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합조사를 통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진하여 시정조치(또는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1의4]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4]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과징금 산정비율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산정비율	과징금 상한액
가. 법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 <u>제4항</u>	해당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	10억원

비고

매출액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 판매 개수(대수)에 해당 내압용기 판매가격(부가가치세 등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호·제5호	50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 만원을 더한 금액 100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u>제5항</u> 제7호의2	10		
다.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호의2	100		
라. 법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법 제84조 <u>제4항</u> 제2호	50		

경우				
마. 법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3호	10		
바. 법 제10조제4항(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 <u>제3항</u> 제1호	50	150	250
사. 법 제10조제5항(법 제10조제7항 및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 <u>제3항</u> 제2호	50	150	250
아.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3)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 <u>제5항</u> 제2호	2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0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84조 <u>제5항</u> 제2호의2	5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20
차.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제6호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카.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제7호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10
타.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u>제3항</u>제3호	100 200 300

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제10호	50 10 5		
하.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 <u>제3항</u>제4호	50 150 250		
거.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 <u>제3항</u>제5호	30 100 150 50 150 250		
너.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제12호	3		

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100
다.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100일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4조 제1항제1호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00 100
러.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 2)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17호 중 광각 실외후사경 및 같은 항 제17호의2 3)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	법 제84조 제4항제13호	100 30 5 3

한다) 및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며.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4호	100
버. 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3호의3	100
버. 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3호의3	100
서.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4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75일 이상인 경우 2)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제1항제2호	<u>600</u> <u>6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u> <u>2,000</u> <u>1,000</u>

가)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1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72일 이상인 경우 4)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u>200</u> <u>2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u> <u>600</u> <u>600</u>
<u>어.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84조 제2항제2호의2</u>	<u>500</u>
<u>저.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84조 제4항제15호</u>	100
<u>처.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경우</u> 1)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2)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24일 이내인 경우 3) 경과 기간이 25일 이상인 경우	<u>법 제84조 제2항제3호</u>	300 3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
<u>커.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84조 제5항제3호</u>	50
<u>터.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u>	<u>법 제84조 제1항제3호</u>	<u>1,000</u>

<u>우</u>		
<u>폐.</u>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5 호의2	10
<u>허.</u>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 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법 제84조 <u>제4항</u> 제13 호의2	100 30
<u>고.</u>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 <u>제2항</u> 제4 호	500
<u>노.</u>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 은 경우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 인 경우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 <u>제5항</u> 제5 호·제6호	2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 한 금액 30
<u>도.</u>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 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6 호	10
<u>로.</u>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 지 않고 사용한 경우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법 제84조 <u>제4항</u> 제17 호	100

경우 가)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다) 검정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30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u>보.</u>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8호	50			
<u>보.</u>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84조 <u>제 5 항</u> 제 6 호의2	2 6 10			
<u>소.</u>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8호의2	30	50	70	
<u>오.</u>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8호의3	40	60	80	
<u>조.</u>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 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19호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0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u>초.</u>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20호	100
<u>코.</u>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84조 <u>제5항</u> 제9호	30
<u>토.</u>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21호	100 10
<u>포.</u>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21호의2	30
<u>호.</u>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22호	30
<u>구.</u>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23호	70 35
<u>누.</u>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84조 <u>제4항</u> 제24호	30
<u>두.</u>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4조 <u>제5항</u> 제8	20

	이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 (생략)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1.~10. (생략)	1.~10. (현행과 같음)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신설>	나. ----- -----<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다.~마. (생략)	다.~마.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8조의3(결함 추정 요건)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설>	제8조의4(자료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

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
부장관에게 법 제31조제13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
사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
사

4.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
료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1조의3제5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
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자동
차 사고 또는 화재 영상

2.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
라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서 또
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
사보고서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자동차 화재발생

<신 설>

종합보고서, 화재유형별 조사서, 피해신고서, 질문기록서

4.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자동차 사고 조사 보고서 및 보험처리 이력

5.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정한 차량가액 기준표

6. 그 밖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사고조사에 필요하여 관계기관과 자료제공에 협의한 자료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의5(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결

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결합정보를 신고,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2. 수집된 결합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통신설비

3. 분석된 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결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결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 개선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업무

3. 자동차결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

4. 그 밖에 자동차결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결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불법 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신 설>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9(위원회의 비공개 정보)

법 제47조의8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
3. 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5. 개별 교환·환불중재사건의 내용

<신 설>

제9조의9(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① ~ ⑥ (생략)

제1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한 정보

제9조의10(위원회 재심의 절차)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
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
9조의6제7항에 따른 위원회 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
의 요청서에 요청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에 관하
여는 제9조의6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11(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9. (생략)

<신설>

20. ~ 31. (생략)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해당

--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사무국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

--

1. ~ 19. (현행과 같음)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1. ~ 32. (현행과 같음)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 설>

<신 설>

⑥ (생략)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 ⑩ (생략)

<신 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⑦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 제5항-----

